

인천지방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사건	2024타경516506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물건번호	1	작성 일자	2026. 2. 2.	담임법관 (사법보좌관)	박인진	<u>전자서명완료</u>
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최선순위 설정	2022.02.17. 압류			배당요구종기	2024. 6. 10.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입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과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										
점유자 성명	점유 부분	정보출처 구분	점유의 권원	임대차기간 (점유기간)	보증금	차입	전입신고일자·외국인등록(체류지변경신고)일자 ·사업자등록 신청일자	확정일자	배당 요구여부 (배당요구일자)	
박서윤	303호 전부	등기사항전 부증명서	주거 임차권자	2021.05.06.	135,000,000		2021.05.06.	2021.04.20.		
주택도시 보증공사 (임차인 박서윤)	303호 전부	권리신고	주거 임차인	2021.05.06.~ 2023.05.05.	135,000,000		2021.05.06.	2021.04.20.	2024.3.19.	
<p><비고></p> <p>주택도시보증공사(임차인 박서윤):주택임차권자인 박서윤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승계인으로서 신청채권자이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일자는 이 사건 신청일임. 이 사건에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 등기의 말소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함.</p> <p>※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 <p>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p> <p>을구 순위 9번 주택임차권등기(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인서가 제출됨)</p> <p>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p>										
비고란										

※1: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

2: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

부동산의 표시

2024타경516506

[물건 1]

1.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33-163

미성아파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23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1층 10.92㎡ 계단실

1층 61.56㎡ 오피스텔

2층 135.65㎡ 아파트

3층 135.65㎡ 아파트

4층 135.65㎡ 아파트

5층 135.65㎡ 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3층303호

철근콘크리트조

39.8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33-163

대 201.7㎡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01.7분의 15.06

감정평가액

135,000,000

회차

기 일

최저매각가격

매수신청보증금

1회

2026.03.13

135,000,000

13,500,000

2회

2026.04.15

94,500,000

9,450,000

3회

2026.05.18

66,150,000

6,615,000

4회

2026.06.24

46,305,000

4,630,500